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930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2023 회계연도 성평등가족기금 결산 결과, 2024 회계연도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179백만원 증액하고,
- 나. 2024년 공모사업 신문광고료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당초 행정운영경비(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신문광고료 7백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성평등 증진사업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7백만원을 신규편성하고자 함.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 및 광고 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세출과목 변경(<sup>(기존)</sup>사무관리비 → <sup>(변경)</sup>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역

〈 수입계획 〉

(단위 : 백만원)

구분	'24년(A) 당초계획	'24년(B) 1차 변경	'24년(C) 2차 변경	증감 (C-A)
계	1,877	1,877	2,056	179
예치금수입	714	714	893	179
일반회계 전입금	100	100	100	-
이자수입	1,036	1,036	1,036	-
기타수입	27	27	27	-

〈 지출계획 〉

(단위 : 백만원)

구분 (정책사업)	'24년(D) 당초계획	'24년(E) 1차 변경	'24년(F) 2차 변경	증감(FD) (증감률)
계	1,877	1,877	2,056	179
비용자성 사업비	1,060	1,060	1,067	7
기본경비	20	20	13	△7 (△35%)
예치금	797	797	976	179 (22.44%)

라. 2024년도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편성목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증감	증감률
지출합계	1,877	1,877	2,056	179	9.5
성평등 증진	1,060	1,060	1,067	7	0.66
여성 권익증진 사업(성평등기금)	1,060	1,060	1,067	7	0.66
공모사업 추진	850	740	747	△103	△12.11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공모사업 컨설팅)	50	50	50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공모사업)	800	690	690	△110	△13.75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신문공고료)			7	7	
양육행복도시 정책 1차 성과평가 및 지수개발 연구용역		110	110	110	
연구개발비		110	110	110	
성평등 주간행사	60	60	60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100	100	100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사업	50	50	50		
일반예산(재무활동)	797	797	976	179	22.44
보전지출(성평등기금)	797	797	976	179	22.44
여유자금예치(성평등기금)	797	797	976	179	22.44
행정운영경비(성평등기금)	20	20	13	△7	△35
기본경비(성평등기금)	20	20	13	△7	△35
기금관리비	20	20	13	△7	△35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신문공고료)	20	20	13	△7	△35

※ 지출계획변경(1차) : 성평등증진사업비 내 2024년 공모사업비를 일부 감액하고(110백만원), 양육행복 도시정책 1차 성과평가 및 지수개발 연구용역 사업 신규 편성(110백만원)

### Ⅲ. 검토의견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가 1억 7,900만원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예치금에 1억 7,900만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성평등기금)에 편성한 700만원을 감액하여 성평등증진중 신규 세부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sup>1)</sup>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①정책사업인 **일반예산(재무활동)**에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재원 1억 7,900만원을 예치하려는 것으로 당초 지출계획(7억 9,700만원)보다 22.4%, 1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그 외에도 다른 ②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성평등기금)**는 당초 지출계획(2,000만원)보다 △35.0%, △700만원을 감액하여 변경(1,300만원)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다만, 또 다른 ③정책사업인 **성평등증진은 행정운영경비(성평등기금)**에서 감액한 △700만원을 신문공고료로 신규 편성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00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이나, 당초 지출계획(10억 6,000만원)보다 0.7%, 700만원 증액하여 변경(10억 6,700만원)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표 3-1〉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당 초 ( A )	1 변 차 경	기금운용 계 획 변 경 안 ( B )	증 감 (C=B-A)	증 감 륜 (D=C/A)
지 출 합 계	1,877	1,877	2,056	179	9.5
성 평 등 증 진	1,060	1,060	1,067	7	0.7
여성 권익증진 사업(성평등기금)	1,060	1,060	1,067	7	0.7
공 모 사 업 추 진	850	740	747	△103	△12.1
재 무 활 동	797	797	976	179	22.4
보 전 지 출 ( 성 평 등 기 금 )	797	797	976	179	22.4
여유자금예치(성평등기금)	797	797	976	179	22.4
행정운영경비(성평등기금)	20	20	13	△7	△35.0

※ 자료근거 : ①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성평등가족기금 지출계획,  
②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4. 5.27) 재구성

○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24년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여유자금을 지출계획중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 이외에도, 정책사업간 예산을 증·감하고자 성평등가족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 요청한 것으로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sup>2)</sup>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2. 제30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3.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